세화고 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세화고등학교 인사 행정의 공정을 기하여 교원 간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칭함)를 설치 운영한다. 본 규정은 「사립학교법」제53조의4(교원인사위원회)와 일주.세화학원 정관 제41조에 따라 세화고등학교에 두는 교원인사위원회(이하「위원회」라 한다.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2조 (위원회의 조직)

- ① 인사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6명을 각 교과별로 (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, 예체능교양) 1명씩 선출하며, 여기에 <u>학교장이 직</u>접 임명하는 3명의 위원을 더하여 9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.
-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(10월 1일~ 9월 30일) 이내로 하되,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징계, 해직 또는 퇴직 시는 자동 해임된다.
- ④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15일 이내에 ①에 따라 선출 및 임명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 심의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조 (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)

-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.
-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인사위원회의 간사 등)

- ① 인사위원회 <u>사무</u>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 단, 간사와 서기는 겸임할 수 있다.
-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5조 (운영세칙)

일주.세화학원 정관 제41조의 11 인사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라 정관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기능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교원(교장 제외)의 임용(징계 포함)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
-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- ④ 교감임용후보자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- ⑤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(보직교사 임명, 교무분장, 교과 담임과 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등)
- ⑥ 교원의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- ⑦ 인사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⑧ 전체 교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- ⑨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장 회의

제7조 (회의 소집 및 의결)

-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, <u>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</u> 때, 교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인사위원회는 <u>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</u>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제8조 (회의록)

-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해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・날인한다.

제 5 장 기능

제9조 (역할)

본 인사위원회에서는 학교장의 자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

역할을 담당한다.

제10조 (교원 임용)

- ① (정의)사립학교법 제2조 제4항 "임용"이란 신규채용, 승진,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하고 "전보"란 교원의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동일 법인 내의 학교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학교장 인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에서 임용한다.

제11조 (신규교사 임용)

-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.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제11 조의3을 준용한다.
- ③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,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·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·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,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하다.
- ⑤ 전형일정, 제출서류, 시험방법, 시험과목, 전형별 배점 및 가산점 기준, 심사 기준,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심의한다.

제12조 (기간제교사 공개채용)

- ①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따른다.
- ② 1개월 이상 결원 발생 시 채용계획을 수립한다. (자격요건, 심사위원 구성, 심사일정, 심사방법 등)
- ③ 공개전형 관련 필요사항, 연장계약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.
- ④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(정관에 의거, 이사회로부터 위임)이 확정한다.

제13조 (교감 후보대상자 심의)

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,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직

경력, 부장 근무경력, 담임 경력, 연수이력 및 연구 실적, 교직관, 결격사유 유무 등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한 후, 복수의 교감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교장이 제청하도록 한다.

제14조 (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)

- ① (부장교사의 추천)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교사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부장교사를 추천할 때는 담당할 업무의 처리 능력이나 교육 경력을 참작한다. 다 만, 교과의 특성이나 분포비율 및 학교조직을 참작하여 추천하도록 한다.
- ② (교과부장 배정)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교과별 교사들의 건의 내용을 참작하여 교과 부장을 추천할 수 있다.
- ③ (학급 담임 배정)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래의 배정원칙을 참고하여 담임을 선정 추천한다.
 - 1. 본인의 희망을 가급적 수렴하되, 행정업무 등을 고려하여 순환 배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정한다.
 - 2. 학년별로 교과, 연령, 성별, 교육경력 등을 안배하여 배정한다.
 - 3. 고령, 출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교사나 학교 운영 상 필요에 의한 교사는 예외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.
 - 4. 중도에 학급담임 결원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배정한다.
 - 5. 학교 명예 실추 및 담임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담임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④ (교무분장 조직)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교무분장을 배정할 수 있다. 이경우 본인의 희망과 해당 부장의 의견을 참작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.
 - 1. 학급담임 배정여부, 본인의 수업시수, 담장자의 경력, 부서별 인원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.
- 2.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.

제15조 (교원의 연수대상자 추천)

본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원칙으로 각종 연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- ① 자격연수는 해당 교사 모두 추천한다.
- ② 직무연수 및 기타연수는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되, 희망자가 정원과 다를 경우에는 부장교사, 해당 연수의 교과 전문 교사, 연수를 받은 적이 없는 교사, 연수이 경험이 오래된 교사, 교육경력이 긴 교사 순서로 추천한다.

제16조 (포상 및 표창 대상자 추천)

본 인사위원회에서는 각종 포상 및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. 추천시에는 사무와 관련한 공헌도, 교직 경력 등을 고려한다.

제17조 (규정개정)

본 규정은 일주.세화학원 정관의 개정이 있거나 학교장의 개정발의, 인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개정발의가 있을 때 <u>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</u>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제18조 (기타 사항)

- 1. 교원의 행정처분 등은 별도의 계획에 따른다.
- 2.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인사관련 사항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 자문한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3.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4.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5.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6. 본 규정은 2019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6. 본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7.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8.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